

『혁신성장뉴딜펀드』 2022년 2차 선정계획 공고

(산은·성장금융 주관)

혁신성장뉴딜펀드 2022년 2차(산은·성장금융 주관)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 개요

항 목	세부내용							
출자자별 위탁운용 금 액	○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: 총 1,470억원 내외 (단위: 억원)							
	정책출자자						합 계	
	정부재정		한국산업은행		성장사다리펀드			
	780	270	420	1,470				
* 출자자별 위탁운용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출자자별 승인 절차 진행함								
분 야 별 출자계획	○ 출자계획 (단위: 개, 억원)							
	지원 분야 (기업투자)		정책출자자		펀드별 목표결성금액	선정 운용사수	조성 목표	주관 기관 ^{주1)}
			출자총액	출자비율				
	블록 인드	지역혁신	720	60.0%	400	3	1,200	산은
		혁신루키	350	50.0%	350	2	700	성장
	프로젝트 ^{주2)}		400	40.0%이내	100이상		2,000	성장
합 계		1,470			5	3,900		
주1) '산은'은 한국산업은행, '성장'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의미 주2) 프로젝트는 자원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								
○ 운용사는 지원분야를 자율 선택할 수 있으나,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								
○ 선정된 운용사간 민간출자자 모집의 과도한 경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결성은 펀드별 결성목표의 200% 이내로 제한하되, 부득이한 경우 200% 초과분에 대한 관리보수는 하향조정 등 별도 협의								
○ 소정의 심사결과 및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에 따라 분야별 정책출자자 개별 출자금액, 비율 및 선정 운용사 수가 변경될 수 있음								
운 용 사 선정방법	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* 한국산업은행: www.kdb.co.kr ,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: www.kgrowth.or.kr							
접수일시	○ 2022년 10월 17일(월) 10:00 ~ 15:00							
접수방법	○ 지원분야별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(8.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 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○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분야별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							

2. 블라인드 펀드

가. 기본항목

항 목	세부내용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* * 지원시 경영참여 목적 투자 여부 명시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 <p>※ (공통사항)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</p>
심사결과 발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 11월 중* * 지원결과,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최종 선정은 정책출자자의 내부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확정
펀 드 결성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4월 30일 * 부득이한 경우 정책출자자 협의하에 2개월 이내 연장가능
운 용 사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,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(사전협의 요망) ○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(규약)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요망 ○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동사의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 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거나 기존 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 출자자중 2/3 이상이 제안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하면, 기존펀드 운용 실적을 본건 제안 운용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- 단,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, 법인 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○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항 목	세부내용
<p>혁신루키 신청자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①~③에 모두 해당되는 운용사에 한해 혁신루키 지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개 이상의 운용사 공동 신청 시 각각 자격을 충족해야 함 ○ 혁신루키 제안 운용사는 하기 분류 기준에 의거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, 제안서 접수 시 펀드운용규모 및 업력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*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료 제출시 금감원 공통업무자료 '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(PEF) 현황' 및 벤처투자 정보센터 '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시스템(DIVA)' 등 참조 ○ 혁신루키 주관기관은 제안 운용사의 혁신루키 해당 여부 확인후 심사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사는 혁신루키 지원 대상 여부 관계없이 타 분야 지원 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안서 작성 기준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내*의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기사 및 창투자: 소관부처 등록일자(등록증)~제안서 작성 기준일(해당 기구 제안 시) 기타: 운용사 설립일자(법인등기부등본)~제안서 작성 기준일 ② 블라인드 펀드 운용 규모*가 약정총액 기준 500억원 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안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제안사가 운용 중인 PE·VC펀드의 약정총액 합계 (프로젝트 펀드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E펀드: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,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,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,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- VC펀드: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(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), 소재·부품·장비전문투자조합, 농수산식품투자조합,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* 기업투자 목적의 투자신탁, 역외 펀드 등 상기 PE·VC펀드 이외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요망 * 제안 운용사가 'PE펀드 또는 VC펀드를 운용중인 기존 운용사(해외운용사 포함)의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'인 경우 기존 운용사를 포함하여 펀드운용규모 및 업력을 산정하며,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* 펀드운용규모 산정시 공동운용(Co-GP) 펀드는 약정총액 전체금액을 사용(운용사수로 나누지 아니함) ③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성장금융의 위탁운용사*로 선정된 바 없는 운용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축출자 및 일괄공모만 해당 </div>

나. 출자분야

항 목	세부내용
주 목 적 투 자 비 율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수도권 소재 뉴딜분야* 중소·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[50%] 이상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뉴딜투자공동기준에 따른 분야 (세부품목은 별첨 엑셀 참조) - 지자체 등 출자금액의 2배 이내를 지정하는 지역에 투자의무 부여 가능 - 단,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 투자 의무는 약정총액의 [40%]를 한도로 함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※ 5개 권역(14개 지역) : 충청권(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), 호남권(광주, 전북, 전남), 대경권(대구, 경북), 동남권(부산, 울산, 경남), 강원·제주권(강원, 제주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수도권 소재 혁신성장분야* 중소·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[10%] 이상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, 모빌리티·물류, 항공·우주, 로봇, 나노, 스마트 농업 등 (세부품목은 별첨 엑셀 참조) ※ 뉴딜분야 기업이 혁신성장분야에도 부합할 경우, 주목적 투자 실적 중복 인정
	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루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뉴딜분야*에 약정총액의 [50%] 이상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뉴딜투자공동기준에 따른 분야, 세부품목은 별첨 엑셀 참조 ○ 혁신성장분야*에 약정총액의 [10%] 이상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, 모빌리티·물류, 항공·우주, 로봇, 나노, 스마트 농업 등 (세부품목은 별첨 엑셀 참조) ※ 뉴딜분야 기업이 혁신성장분야에도 부합할 경우, 주목적 투자 실적 중복 인정 ○ 국내 중소·중견기업*에 약정총액의 [50%] 이상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 포함

다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
정 책 출 자 비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혁신 : 정책출자비율 [60%]로 제안 ○ 혁신루키 : 정책출자비율 [50%]로 제안
운 용 사 출 자 비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정총액의 1% 이상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* LLC형 V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						
존속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															
투자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															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															
운용보수	<p>○ 관리보수 :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(단위 : 억원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*</th> <th>≤500</th> <th>≤1,000</th> <th>≤2,000</th> <th>2,000<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투자잔액</td> <td>2.0% 이내</td> <td>1.5% 이내</td> <td>1.0% 이내</td> <td>0.5% 이내</td> </tr> <tr> <td>(약정총액 - 투자잔액)</td> <td>1.9% 이내</td> <td>1.4% 이내</td> <td>0.9% 이내</td> <td>0.4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펀드성립일로부터 2년간: 투자잔액 및 (약정총액 - 투자잔액) 기준 / 2년 ~ 존속기한: 투자잔액 기준 *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</p> <p>○ 성과보수 : ① 또는 ② 중 택일 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% 이내 ② 기준수익률 초과시 총 누적이익의 20%, Catch-up 40% 이내</p> <p>○ 기준수익률 - 지역혁신 : 내부수익률(IRR) 기준 5%(Catch-up 선택시 7%) 이상 제안 - 혁신루키 : 내부수익률(IRR) 기준 7%(Catch-up 선택시 9%) 이상 제안</p> <p>○ 상기 보수 체계를 기본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·성과보수를 연계 구성하여 제안 가능(사전 협의 요망)하며, 펀드별 보수 체계는 선정 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</p>	구 분*	≤500	≤1,000	≤2,000	2,000<	투자잔액	2.0% 이내	1.5% 이내	1.0% 이내	0.5% 이내	(약정총액 - 투자잔액)	1.9% 이내	1.4% 이내	0.9% 이내	0.4% 이내
구 분*	≤500	≤1,000	≤2,000	2,000<												
투자잔액	2.0% 이내	1.5% 이내	1.0% 이내	0.5% 이내												
(약정총액 - 투자잔액)	1.9% 이내	1.4% 이내	0.9% 이내	0.4% 이내												
민간출자자 인센티브	<p>○ 민간출자자*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로, 아래 ①, ②, ③ 중 택일 또는 미선택 가능 ※ 인센티브 선택 여부는 평가와 무관</p> <p>* 민간출자자 범위: 운용사, 운용사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, 해외출자자, 정책기관(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)을 제외한 출자자. 연기금·공제회와 같은 민간자금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는 민간출자자에 포함하며,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준임(알리오 홈페이지 www.alio.go.kr 참고)</p> <p>① 초과수익 이전 -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시,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* 중 10% 이내** 금액을 민간출자자에 인센티브로 지급</p> <p>*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 후 정책출자자(정부재정, 한국산업은행, 성장사다리펀드) 앞 배분되는 금액</p> <p>** 지급 시점시마다 민간출자자 비중을 아래의 산식에 적용하여 지급률 산정 초과수익 지급률 = 10% × (민간출자자비중/50%) (단, 최대 지급률은 10%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)</p>															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② 후순위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시, 민간출자자 출자액의 10% 이내에서 정부 재정을 재원으로 우선 손실 분담 - 단,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, 민간출자자에 배분될 초과수익의 10%를 후순위 출자자에 이전하는 구조로 제안해야 함* <p>* 이전 한도: 후순위 보장금액</p> <hr/> <p>③ 콜옵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기간 종료시점에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*으로 재정출자금액을 한도로 민간출자자 지분율**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<p>* 행사가격 = 재정출자액 × [1 + (결성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+2.0%)]^{경과기간}</p> <p>** 전체 민간출자자 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추 가 인센티브	<p>○ 운용사는 기본, 선택 인센티브(①, ②, ③중 택일) 충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일부를 달성률에 따른 비율만큼 부여받음</p> <p>※ 각 인센티브 판단기준은 투자시점 기준임</p> <p>○ (기본)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뉴딜분야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초과실적 [(뉴딜분야 투자금액 합계/약정총액) - 의무투자비율]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115 1433 1205"> <tr> <td>초과달성비율</td> <td>20%p 이상</td> <td>25%p 이상</td> <td>30%p 이상</td> </tr> <tr> <td>인센티브 지급 비율</td> <td>2% 이상</td> <td>3% 이상</td> <td>5%</td> </tr> </table> <p>① (선택)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·벤처기업 신주 보통주 투자실적 (보통주 투자금액 합계/총 투자금액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384 1433 1473"> <tr> <td>신주 보통주 투자 비율</td> <td>20% 이상</td> <td>30% 이상</td> <td>4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인센티브 지급 비율</td> <td>2% 이상</td> <td>3% 이상</td> <td>5%</td> </tr> </table> <p>② (선택) 기술우수·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기업 1000 또는 TCB(TI) 4등급 이상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(투자실적 합계/총 투자금액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657 1433 1747"> <tr> <td>혁신·기술우수 투자비율</td> <td>20% 이상</td> <td>30% 이상</td> <td>4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인센티브 지급 비율</td> <td>2% 이상</td> <td>3% 이상</td> <td>5%</td> </tr> </table> <p>③ (선택) 비수도권 투자실적(지역혁신限, 혁신루키 지원시 선택불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 투자실적 (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 투자금액 합계/총 투자금액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937 1433 2049"> <tr> <td>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 투자비율</td> <td>70% 이상</td> <td>75% 이상</td> <td>8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인센티브 지급 비율</td> <td>2% 이상</td> <td>3% 이상</td> <td>5%</td> </tr> </table>	초과달성비율	20%p 이상	25%p 이상	30%p 이상	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신주 보통주 투자 비율	20% 이상	30% 이상	40% 이상	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혁신·기술우수 투자비율	20% 이상	30% 이상	40% 이상	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 투자비율	70% 이상	75% 이상	80% 이상	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
초과달성비율	20%p 이상	25%p 이상	30%p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주 보통주 투자 비율	20% 이상	30% 이상	4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혁신·기술우수 투자비율	20% 이상	30% 이상	4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수도권 소재 중소·중견기업 투자비율	70% 이상	75% 이상	8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센티브 지급 비율	2% 이상	3% 이상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항 목	세부내용
핵심 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○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핵심운용인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*을 충족해야 함 *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별 제안서 엑셀 서식 '작성요령' 참조 ○ 핵심운용인력(대표펀드매니저 포함)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*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,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(규약)에 기재 ○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 참여 <hr/> <p>※ 한국산업은행 주관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 중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○ 제안사는 선정 심사 시 평가대상이 되는 핵심운용인력 3인(대표펀드매니저 1인, 핵심운용인력 2인)을 지정*하여 제안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2인(대표펀드매니저 1인, 핵심운용인력 1인)을 지정 * 대표펀드매니저와 핵심운용인력의 평가 가중치가 차등 적용됨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펀드 최종 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 계 감 사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○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 IGS(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)를 활용한 뉴딜 투자 실적 제출 의무

항 목	세부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펀드 조성목적에 따라 뉴딜 투자실적 및 집계를 위한 사항으로 정관(규약)상 비밀유지 조항의 예외사항으로 정관(규약)에 반영하며 피투자 기업의 정보 제공 동의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공정보: 투자기업개요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명, 업종코드, 기업규모, 설립일자, 지역구분), 식별정보(구분, 식별번호, 뉴딜 품목코드, 기표일, 기표금액)
공정가치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'지분법(연결)' 패키지를 한국산업은행 앞 제출 (한국산업은행 주관분야, 정관(규약) 반영사항)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○ 최다출자자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을 우대적용(예: 관리보수 인하) 가능 - 주목적 투자분야, 비율 등 뉴딜펀드 조성목적에 훼손하는 조정 불가 ○ 투자촉진 인센티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기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선정 후 4개월 내 목표결성금액 이상으로 펀드 결성하고 '23년 6월말까지 약정총액의 10% 이상 투자*할 경우 제공 - '23~'24년 주관기관별 일괄심사방식의 재정출자사업 서류심사 가점**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VC펀드는 구주, 상장사, 해외투자 제외, PE펀드는 해외투자 제외 ** 주관기관별로 판단 (예 : 산은 지원 운용사가 산은에 지원할 경우 가점 부여) ○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(Parallel 펀드)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,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정책출자자 출자비율 등을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-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을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다만,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, 세부 운용조건, 결성일 등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○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원 활용 펀드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, 세부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 ○ 주관기관의 내규, 정관(규약)을 우선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관기관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(편입가능 자산 유형)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정관(규약)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항 목	세부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책임투자(ESG, 스투어드십코드 등) 관련 운용사 내규, 구축 및 운영 현황, 도입 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, 심사시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보호(E), 사회적 책임(S), 적정한 지배구조(G) 요소 등을 종합 고려 ○ 해외투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사의 해외투자 가능 비율은 약정총액의 [20%] 이하로 제한하며, 해외투자는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* 해외투자 예시</p> <p>가.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외국기업</p> <p>나.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</p> <p>다. 회사(펀드)가 국내기업(SI)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</p> <p>라.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 유치 또는 사업의 외국진출을 위해 해외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(단, 국내에 사업장과 인력 유지, 내국인이 경영권을 보유)</p> <p>마. 전제 고용인력 대비 한국 내국인 고용률이 50% 이상인 외국기업</p> <p>바. 국내기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, 기술 관련 공동 연구·개발과 관련하여,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</p> <p>※ 허용비율, 투자분야 등 세부 사항은 정관·규약 협의 과정에서 확정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하여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 과정에서 지원분야별 주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

3. 프로젝트 펀드

항 목	세부내용
운 용 사 선 정 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함 *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: www.kgrowth.or.kr
접 수 일 시	○ 수시 접수
심 사 결 과 발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시 선정 ※ 최종 선정은 정책출자자 내부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됨
펀 드 결 성 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* * 단, 부득이한 경우 정책출자자 협의하에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
기 타 사 항	○ 존속기간, 투자기간 등 주요 출자조건 등은 상기 블라인드 펀드 조건의 내용 범위 내에서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

4. 선정 우대 항목 (블라인드 펀드에 한함)

- 주관기관의 위탁 운용 펀드 청산 수익률이 우수한 경우
- 「스타트업·벤처기업 지원방안」 관련 투자 촉진 및 조기 결성 인센티브를 달성한 경우 (개별 증빙 제출 및 협의 필요)
- 「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정시(기업투자) 및 수시(기업투자) 출자사업」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달성한 경우 (개별 증빙 제출 및 협의 필요)
- ESG 투자 역량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5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 (전분야 공통)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- ※ 다만,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써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목표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)에 미달하는 경우
- 본 펀드의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시 원칙적으로 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

6. 제재 사항 및 기타 (전분야 공통)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
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, 동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출자사업에 제안시 감점(가점)되거나,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
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2.08.31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7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구술심사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일 자	내 용	비 고
2022. 10. 17	제안서 접수	10:00~15:00
2022. 11월 중	최종 선정	개별 통지
2022. 12월 중	출자확약서 발급	출자자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
2023. 4. 30	펀드 결성 완료	-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민간 주관 출자사업 안내

- 민간 재정모펀드 운용사가 주관하는 '22년 2차 혁신성장뉴딜펀드 출자사업은 9월 중 별도 공고 예정

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 및 문의방법

-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*
 - 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-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2부)를 제출
 - 분량 :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PT자료, 파일 별도 지참)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자사업 설명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며,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FAQ를 출자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
-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(문의사항 집계, FAQ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)

구 분	지역혁신	혁신루키, 프로젝트
주 관 기 관	한국산업은행 (간접투자금융실)	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(투자운용2본부)
주 소	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	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5층
전 화 번 호	02-787-0688, 0670, 0680, 0681	02-2090-9139(혁신투자2팀)
E - M a i l	kdbindirect@kdb.co.kr	dhkim@kgrowth.or.kr

2022년 9월 19일

한 국 산 업 은 행
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